

〈자료〉

統監府裁判所 設置에 관한 資料

— 倉富勇三郎와 梅謙次郎의 의견서 —

문준영*

목 차

- I. 일제의 한국사법제도 ‘개혁’과 사법권 침탈
- II. 자료의 소개
 1. 자료의 소장사항
 2. 倉富勇三郎의 「韓國에서의 裁判事務에 관한 件」
 3. 梅謙次郎의 「韓國에서의 裁判制度 改正에 관한 卑見」
 4. 梅謙次郎의 「사법권위임협약의 실시에 관한 비견」

<자료>

<번역>

I. 일제의 한국사법제도 ‘개혁’과 사법권 침탈

1909년 10월 統監府裁判所의 설치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한국통감으로 취임한 후 의욕적으로 펼친 한국사법개혁 작업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다. 1907년 7월 12일 丁未七條約(‘제3차 일한협약’)에 따라 1907년 12월 23일 새로운 裁判所構成法(법률 제8호)이 제정되어 19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시행 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1909년 7월 12일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무를 일본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가 교환되고, 1909년 10월 16일 일본 칙령으로 統監府裁判所令(일본칙령 제236호)의 공포되어, 일본재판소인 통감부재판소가 한국내의 사법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 목적과 배경이 무엇인지, 이토 히로부미의 대한통치노선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¹⁾

보호조약 이후 이토가 추진한 한국사법제도 개혁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施政改善의 일환으로 한국 재판제도를 개혁한다는 것과 장래 한국에서의 제외국의 治外法權을 폐지를 도모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이토와 일본정부의 對韓統治政策, 그것을 둘러싼 국내적·국제적 환경, 그리고 몇 가지 현실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이 맞물리면서 사법제도 개혁의 구체적인 상이 잡혀나갔다. 1907년 12월 성립한 신 재판제도가 행정과 사법의 분리, 일본의 재판제도를 모방한 재판소의 조직, 일본인 사법관의 임용 등을 통하여 한국재판제도 자체를 개혁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후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급속하게 사태가 전개되었다. 이토의 보호정치노선이 파탄에 이르고 병합노선이 전면화되는 정세변화가 배경에 깔려 있지만, 아울러 일본인 거류민에 대한 재판제도의 개선, 1908년 5월 체결된 미일간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조약을 한국에 실시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치외법권을 폐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과 같은 복잡한 현안들을 해결하여야 하였다.

어떻게 이러한 목적들이 종합적으로 구현되는 재판제도를 설계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감부 내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 大審院 檢事總長이었던 코쿠부(國分三亥)는 1909년 9월의 시점에서 “한국인만의 재판을 목적으로 삼으로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제외국이 한국에 가지는 치외법권의 철거는 실로 急務에 속하며” 또한

1) 이에 관한 일본에서의 근래의 연구로는, 森山茂徳, 『保護政治下韓國における司法制度改革の理念と現實』, 淺野豊美・松田利彦 編, 『植民地帝國日本の法的構造』(信山社, 2004); 李英美, 『韓國司法制度と梅謙次郎』(法政大學出版局, 2005); 小川原宏幸, 『日本の韓國司法權侵奪過程—「韓國の司法及監獄事務を日本政府に委託の件に關する覺書」をめぐって』, 『文學研究論集』 11號(明治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 1999) 등.

“한국에서의 일본인에 대한 사법제도는 매우 불편하여” “그 개선은 초미의 급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해 언급하였다.²⁾

즉, ① 한국의 사법제도를 점차 정비하여, 구미제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시키고 한국법전을 적용하는 방안은, 한국민과 제외국인을 모두 만족시키는 법전편찬이 곤란하며 과연 피보호국에 法權에 구미제국이 복종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② 한국의 사법제도를 정돈하고 우선 일본인으로 하여금 일본법률의 적용 하에 한국법권에 복종시킨 다음, 다른 외국인으로 하여금 일본법률의 적용 하에 한국법권에 복종시키는 방안은, 한국재판소가 일본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제외국도 치외법권 철거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일본인에 대한 일본재판소의 제도를 정돈함으로써 일본의 법률을 적용하고, 그 후 외국인으로 하여금 일본재판권의 관할에 복종시키는 방안은, 프랑스의 튀니지의 선례가 있고 양호한 방법이지만, 한국에 두 개의 완전한 재판기관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④ 일본법률을 적용하는 일본재판소를 설치하지만, 그 재판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한국재판소와 동일하게 하고, 일본인 직원이 일면은 한국재판소의 직원으로서 한국법률의 적용 하에 한국인을 지배하고, 일면은 일본재판소의 직원으로서 일본법률의 적용 하에 일본인 및 다른 외국인을 재판하는 방안은, 극히 양호한 방법이지만 조직이 복잡하다는 결점이 있다. ⑤ 한국의 사법사무를 일본에 위탁시키는 방안은, 일본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일본정부 및 일본인민의 이의가 없다면 최선 최량의 방법이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자료들은 위 ④와 ⑤에 관련하여 통감부 내부의 논의과정을 보여준다. 1건은 당시 法部次官 쿠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郎)의 것이며, 2건은 한국정부 法律顧問이자 法典調査局의 顧問이었던 우메 켄지로(梅謙次郎)의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에게 상신하였거나 또는 그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다. 이 세 문서는 근래 이토의 한국 통치에 관한 일본의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보호국기 사법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이

2) 國分三亥, 「司法權委任に就て」, 『朝鮮』第4卷 第1號(1909. 9), 10~11면.

강조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료로 실었다. 아울러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말미에 번역문을 붙였다.

II. 자료의 소개

1. 자료의 소장사항

각 자료의 소장처, 청구기호, 형태 및 분량에 관해서는 다음의 표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제목	韓國ニ於ケル裁判事務ニ關スル件	韓國ニ於ケル裁判制度改正ニ關スル卑見	司法權委任協約ノ實施ニ關スル卑見
작성자	倉富勇三郎	梅謙次郎	梅謙次郎
작성시기 (추정)	1908년말~1909년초	좌와 같음	1909년 8월~9월
소장처	(日本) 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日本) 法政大學 圖書館	좌와 같음
청구기호	倉富勇三郎關係文書, 三〇-19	梅謙次郎文書, 第3部門 韓國立法起案關係文書, 韓國立法事業擔任當時ニ於ケル起案書類(A5a/25) 19	좌와 같음, 韓國立法事業擔任當時ニ於ケル起案書類(A5a/25) 18
형태 및 분량	법부용 10행패지 11매(20면), 수기작성.	부동산법조사회용 10행패지 7매(13면), 수기작성	법전조사국용 10행패지 5매(10면), 수기작성

2. 倉富勇三郎의 「韓國에서의 裁判事務에 관한 件」

이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현정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倉富勇三郎關係文書」에 속한 문서로서, 쿠라토미 유자부로 법무차관이 한국에 일본재판소로서 통감부재판소를 설치하는 건에 관하여 이토에게 상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거류 일본인의 소송사건을 위하여 한국재판소의 조직을 활용하여 일본재판소 즉 통감부재판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일본인에게도 이익이며, 장차 한국에

서 諸外國의 가지는 치외법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면서, 통감부재판소를 조직하는 법률 및 칙령안들을 열거하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코쿠부가 말하였던 방안 ④에 해당한다.

첨부된 법률안 「한국에서의 재판사무에 관한 건」 부칙 제6조에서 시행일을 명치42년(1909년) 4월 1일로 예정하고 있다. 일본 제국회의의 협찬을 얻어 법률에 의하여 통감부재판소를 조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행예정일로 보아 이 문서는 1908년 말이나 1909년 초에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률안은 1906년 (일본)법률 제56호 “한국에서의 재판사무에 관한 법률(韓國ニ於ケル裁判事務ニ關スル法律)”의 폐지를 전제하고 있다. 법률 제56호는 한국에서 종래의 영사재판제도를 폐지하고 統監府理事廳과 統監府法務院이 일본인 거류민의 사건을 재판하도록 하고 있었다.³⁾ 법률 제56호상의 재판제도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한국재판소이자 일본재판소인 통감부재판소를 설치하기 위한 법령안들이 기안되었던 것이다. 법률안 제5조에서는 “재판사무에 관하여 한국에서 적용하는 법률에 관해서는 명령으로써 별단의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하였다. 명령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통감이라고 할 것이다. 즉 일본인의 재판에 관하여 적용할 일본 법률에 일정한 특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통감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문서 중에 등장하는 “日米條約”이란, 1908년 5월 19일 조인되어 같은 해 8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에서의 發明·意匠·商標 및 著作權의 보호에 관한 일미조약」을 말한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에서의 이들 권리에 관한 한·미·일 국민의 사건은 한국내의 일본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게 되었다. 쿠라토미는 이 조약에 의하여 한국내의 일본재판소가 일본 법률에 의하여 외국인의 재판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졌음에 착목하고, 한국재판소와 일본재판소를 겸하는 통감부재판소를 설치한다면 장차 제외국의 치외법권을 사실상 철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⁴⁾

3) 문준영, 「帝國日本の 植民地 刑事司法制度의 形成 : 1895年~1912年 臺灣과 朝鮮에서의 法院과 刑事法規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23호(2001), 119면 참조.

의견서 제출 이후 통감부 내부에서 어떠한 논의가 오고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거류민 재판제도의 개선, 장래의 치외법권 철폐라는 당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설사 의견서 내용과 같은 입법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제국의회를 통과하기는 극히 힘들었을 것이다. 제국의회에서 법률 제56호 심의 당시 일본의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없고 칙령으로 특례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한국 내 일본거류민을 불평등하게 취급하고 위헌적이라는 시비가 있었다.⁵⁾ 쿠라토미 의견서의 법률안의 경우, 일본인 법관이 사건을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감부재판소는 한국법에 근거하여 조직된 재판소의 조직, 명칭, 관할구역을 그대로 활용한 재판소이며, 법률 제56호와 같이 한국내의 재판기관에서 일본거류민의 소송사건을 처리한다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칙령도 아닌 통감의 명령으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 때문에, 위헌시비가 더욱 거세게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들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다음의 문서에서 우메 켄지로가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다.

3. 梅謙次郎의 「韓國에서의 裁判制度 改正에 관한 卑見」

일본 호세이(法政)대학 도서관 귀중본실에 소장된 「梅謙次郎文書」 “第3部門 韓國立法起案關係文書” 중 “한국입법사업담임 당시의 기안서류”(이하 ‘기안서류’라고 한다) 제19번의 문서이다.⁶⁾ 이 문서에서 우메 켄지로는 앞의 쿠라토미의 의견서에 대하여 논평을 하고 몇 가지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흘림체(崩し書

4) 이 조약을 한국에 실시하기 위한 한국법제 개선책에 관한 논의 과정에 관해서는, 小川原宏幸, 「統監伊藤博文의 韓國法治國家構想의 破綻 - 「韓國ニ於ケル發明意匠商標及著作權保護ニ關スル日米條約」施行に伴う 韓國國民への日本法適用問題をめぐって」, 『姜徳相先生古稀退職記念 日朝關係史論集』(新幹社, 2003) 162-87면 참조.

5) 문준영, 앞의 글, 120면.

6) 우메 켄지로 문서 목록에 관해서는 梅文書研究會編, 『法政大學圖書館所藏 梅謙次郎文書目録』(法政大學ボアソナード記念現代法研究所, 2000) 참조.

키)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정서하지 않은 초안이라고 할 것이다.

우메는 “쿠라토미 법무차관의 제의에 의한 개정의견은 만약 지장없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면 가장 사의에 부합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제도 실시에 따르는 운영경비의 증가, 소송절차법 기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인 거류민에 대한 재판권을 한국재판소로 이전하면 비용의 증가 없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쿠라토미의 의견에 대해 재판통계를 활용하여 반론을 펴고, 증가할 비용은 응당 일본정부가 지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앞의 쿠라토미의 의견서나 이 우메의 의견서를 기초로 삼는다면, 이 시점에서 한국의 사법사무를 일본정부에 위탁한다는 구상이 통감부 내에서 거론되고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우메 켄지로의 「사법권위임협약의 실시에 관한 비견」

앞서 언급한 우메 켄지로의 “한국입법사업담임 당시의 기안서류” 제18번의 문서이다. 1909년 7월 12일의 사법·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우메는 “協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의 실시에 수반된 법제정비 방안과 관련하여 區裁判所 미개청지에 관한 조치, 소송절차와 통감부재판소의 설치법령, 직원의 대우, 사법경찰관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통감부재판소령이 1909년 10월 16일 공포되었음을 감안하면, 이 의견서는 1909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우메는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다.⁷⁾ 1909년 9월 東京經濟學協會 월례회 강연에서 우메는 간략하게 사법권 위임 협약 실시에 따른 재판소 설치 등에 관한 언급하면서, “大審院(명칭은 변할지도 모릅니다) 1개, 공소원 3개, 지방재판소 8개(다만 1개가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구재판소 112개가 설치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과 같이 통감부내의 논의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 주는 발언을

7) 東川德治, 『博士梅謙次郎』(法政大學, 1917)에 수록된 연보를 보면, 우메는 1909년 1월 12일 일본으로 귀국하였다가 같은 해 12월 28일 다시 한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되어 있다.

하고 있다.⁸⁾ 통감부와 연락이 있었다는 뜻이며, 이렇게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의견서도 작성되었을 것이다.

10월 16일 일본칙령으로 「통감부재판소령」이 공포되었지만, 의견서 작성 시점에서는 “統監府裁判所構成法”과 같이 법률로 공포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었다. 우메도 언급하였듯이 이 문제는 일본의 제국헌법이 피보호국인 한국에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를 둘러싼 해석론을 비롯하여 식민지에 대해 일본이 취해 온 그 동안의 헌법적 관행과 관련되어 있다. 문서 내용으로 보아 각종 법령안이 수록된 별지가 있었겠지만, 현존하는 문서철에는 남아있지 않다. 우메는, “統監府裁判所事務取扱規則”과 “統監府裁判所構成法”에 대해 언급하면서, 소송절차에 대한 특례를 칙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기 위하여 “통감부재판소구성법”을 “統監府裁判法” 또는 다른 명칭을 채용하고 보완할 것을 건의하였다. “통감부재판소사무취급규칙”은 쿠라토미 법무차관이 먼저 제출한 의견서에 포함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통감부재판소구성법”의 경우 쿠라토미의 것인지 우메 본인의 것인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문맥상 “통감부재판소구성법”도 당초 쿠라토미의 상신서에 포함된 법안이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대심원검사장 코쿠부(國分)는 후일 통감부재판소령의 기안자는 “우메 박사임에 틀림없다”고 하면서, 당시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⁹⁾

“원안에는 高等法院檢事局에 檢事總長을 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검사총장을 둔다고 하면, 그 직명이 검사총장, 즉 고등법원검사총장이 아니기 때문에, 内地의 검사총장과 혼동되기 쉽다, 그렇다면 고등법원에 고등법원검사총장을 둔다고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으므로, 오히려 고등법원검사국에 高等法院檢事長을 둔다고 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제의하여, 그대로 수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8) 梅謙次郎, 「韓國の法律制度に就て」(下), 『東京經濟雜誌』 1514號(1910.10.30), 794면.

9) 「朝鮮における司法制度近代化の足跡(朝鮮司法界の往事を語る座談會) 友邦シリーズ・第4號(友邦協會, 1966), 87~88면.

이 말을 신뢰하면, 통감부재판소를 조직하는 법령, 즉 통감부재판소령안이나 통감부재판법안은 우메가 기안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우메 켄지로 문서를 보면 우메가 1907년 7월 정미칠조약의 부속각서에 기재된 재판소 설치방안의 초안(“기안서류” 제17번), 1907년 12월의 재판소구성법의 초안을 기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기안서류” 제27번). 재판소를 구성하는 법에 관한 한 우메가 깊숙이 관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사법권 위탁에 따라 통감부재판소를 조직하는 법령의 초안도 일단 우메에게 맡겨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기안서류” 28번 이하에는 「統監府裁判法案」을 비롯한 관련 법률안과 칙령안 16건이 수록되어 있다.¹⁰⁾ 실제 공포된 법령과 몇몇 중요한 차이가 있으나, 통감부재판소령 및 일련의 칙령들의 초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법령 초안을 모두 우메가 직접 작성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문서에 표기된 수정의견을 보면 원안 작성자의 것으로 보기 힘든 것도 있다.

「통감부재판법안」의 경우 우메가 관여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기안서류 제 28-1번인 「통감부재판법안」 제43조는 “고등법원 검사국에 고등법원검사장을 둔다.”고 되어 있다. 앞의 코쿠부의 말에 비추어보면, 코쿠부의 의견이 반영된 안인 것처럼 생각된다. 그런데 문서를 보면 해당 조문의 문구 옆에 수정할 내용을 기재하여, “大審院檢事局”에 “統監府檢事總長”을 두도록 하고 있다. 문서에 나타난 수정개소들은 대부분 명칭에 관한 것이다. 전후 사정으로 볼 때 우메가 수정의견을 가필한 것으로 추측된다. 1907년의 한국 재판소구성법상의 조직과 명칭을 가급적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가 엿보인다. 코쿠부의 회고, “기안서류” 제28번의 「통감부재판법안」과 수정흔적, 그리고 최종적인 통감부재판소

10) (法律案)統監府裁判法, (勅令案)統監府判事檢事任用令, (勅令案)統監府判事檢事官等給與令, (法律案)韓國ニ於ケル司法事務及監獄事務取扱ニ關スル件, (勅令案)韓國人ニ對スル司法事務取扱規則, (勅令案)韓國ニ於ケル監獄事務取扱規則, (勅令案)統監府司法廳官制, (勅令案)統監府監獄官制, (勅令案)統監府裁判所書記長及統監府裁判所書記任用令, (勅令案)統監府典獄統監府看守長及統監府監獄通譯生任用令, (勅令案)統監府司法廳職員給與令, (勅令案)統監府裁判所書記長統監府裁判所通譯官統監府裁判所書記及統監府裁判所通譯生官等給與令, (勅令案)統監府監獄職員官等給與令, (勅令案)統監府裁判所及統監府監獄ノ職員タル韓國人ニ關スル件, 統監府裁判事務取扱規則.

령을 대조하면서 생각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경위로 통감부재판소령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

즉, “기안서류” 제18번에 나오는 「통감부재판소구성법」은 우메가 직접 기안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메의 의견 또는 사전작업을 기초로 작성되었을 것이다. 우메는 의견서에서 “통감부재판법”으로 그 명칭을 바꾸거나 적용법규에 특례를 설정하기 위한 위임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하였다. 당초의 법안과 우메의 의견을 참고하여 통감부 내에서 「통감부재판법안」이 만들어졌다. 「통감부재판법안」이 실린 “기안서류” 제28번 문서는 통감부에서 준비한 법안에 우메가 손질을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후 최종적인 논의를 거쳐 법률이 아닌 칙령으로 통감부재판소령이 공포되었다.

그 성립 경위야 어찌 되었든, 「통감부재판법안」과 통감부재판소령의 내용을 비교하면, 법률이냐 칙령이냐는 것 외에도 중요한 차이가 발견된다. 전자는 5개 章에 본칙 45개조 부칙 4개조로 되어 있지만, 후자는 章의 구별 없이 본칙 27개조 부칙 3개조로 되어 있다. 그만큼 내용이 축약된 것이다. 통감부재판소령에는 한국인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여러 규정들이 있지만, 「통감부재판법안」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통감부재판법안」에는 한국에서 적용하는 법률에 관해서는 칙령으로써 별단의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제15조),¹¹⁾ 1906년 법률 제56호를 폐지한다고 하였다(부칙 제49조).¹²⁾ 통감부재판소령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요컨대 「통감부재판법안」이 전적으로 일본인 사건의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통감부재판소령은 일본인과 한국인 사건 모두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통감부재판법안」과 통감부

11) 이는 우메의 의견이 반영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12) 1906년 법률 제56호는, 1909년 10월 18일 긴급칙령 「明治39年 법률 제56호 폐지의 건」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일본 제국헌법상 정부는 긴급칙령을 다음 회기의 제국의회에 제출하여 승낙을 얻어야 하고, 승낙이 없으면 정부는 장래를 향하여 긴급칙령의 효력이 상실됨을 공포해야 한다(제8조). 그러나 정부는 사후 승낙을 구하지 않았고, 이에 제26의회 중의원에서 1910년 3월 사후승낙안을 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第26會帝國議會 衆議院議事速記録』, 『帝國議會 衆議院議事速記録 24』(東京大學出版會, 1981), 505쪽 이하.

재판소령을 동일 평면에서 비교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료 해설이라는 이 글의 성격상 더 이상 논의를 확대하지는 않겠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쿠라토미와 우메의 의견서 및 법령안들은, 일제에 의한 한국 사법제도 개혁의 성격, 사법권 위탁과 통감부재판소 설치에 관한 논의과정, 통감부 내에서의 쿠라토미와 우메의 위상과 역할에 평가하는 데에 매우 귀중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서자료들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자료〉

※ 일러두기

1. 이하의 자료는 필기로 작성된 일본어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내용은 뒤에 붙인 번역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원문에는 구두점이 없지만, 필요에 따라 구두점을 넣었다.
3. 한자의 경우 가급적 원문의 표기를 존중하였으나, 약자로 표기된 것은 모두 정자로 바꾸었다.
4. 설명이 필요한 대목에 각주를 붙였다.

자료 1

韓國ニ於ケル裁判事務ニ關スル件

在韓國日本人ニ對スル裁判ノ制度ハ、領事裁判ヨリ現今ノ理事廳裁判ト爲リタルモノニシテ、領事裁判ニ對シテハ内地ノ上級裁判所ニ上訴スルコトヲ許シタルヲ改メ、現今ニテハ上訴ヲ審判セシムル爲メ、特ニ統監府法務院ヲ置カレタルモ、制度ノ大體ニ於テハ領事裁判ノ時代ト格別ノ變更ナシ。在韓國日本人ノ訴訟ヲ審判セシムル爲メ、特別ニ多數ノ裁判所ヲ設置スルハ、固ヨリ望ムヘキコトニ非サルヲ以テ、既往ニ於テハ現行ノ制度ヲ以テ最善ノモノト爲ササルヲ得ス。然レトモ理事廳ハ裁判ヲ以テ專務ト爲スモノニ非サルニ因リ、假令理事官又ハ副理事官ノ技能ハ司法官ニ讓ル所ナシトスルモ、諸種ノ點ニ於テ專務ノ裁判所ニ及ハサル所アルハ、蓋已ムヲ得サルコトナルヘシ。翻テ韓國ノ

* 홀림체 글씨가 많은 우메 겐지로의 문서를 판독하면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방광석 박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김창록 교수는 번역문을 검토하여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두 분께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원문의 판독과 번역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裁判制度ヲ見レハ、事創設ニ屬シ不備不整ノ所多キハ固ヨリ免レ難キコトナルモ、裁判所ノ構成略ニ日本ノ現制ニ同シク、其職員ノ多數、亦日本ヨリ聘用セラレタルヲ以テ、裁判ノ實質ニ於テハ必シモ日本ノ裁判所ニ比シ難キニ非ス。然レトモ韓國ノ法律ハ極メテ不完備ナルヲ以テ、在韓國日本人ヲシテ遂ニ韓國ノ裁判權ニ服セシメ難キハ言ヲ俟タス。法律ノ制定ハ容易ノ業ニ非サルヲ以テ、少クモ今後兩三年ヲ費スニ非サレハ、其完備ヲ期シ難カルヘシ。故ニ今日ニ於テハ在韓國日本人ニ關スル訴訟ハ、韓國ニ聘用セラレタル日本法官ヲシテ日本裁判所ヲ構成セシメ、日本ノ法律ニ從テ審判セシムルヨリ便ナルハナカルヘシ。此方法ニ依ルトキハ韓國ニ於テハ別ニ損スル所ナク、而シテ日本人ノ利益ヲ享クル¹⁾コトハ決シテ鮮少ナラサルヘシ。加之韓國ニ於ケル專務ノ日本裁判所ヲ設置スルニ至ラハ、特許、意匠、商標等ニ關スル日米協約²⁾ノ例ヲ擴充シ、在韓國外國人ヲシテ一切ノ訴訟ニ付キ日本裁判所ノ裁判權ニ服セシムルモ亦至難ノコトニ非サルヘシ。若シ外國人ヲシテ日本ノ裁判權ニ服セシムルコトヲ得ルニ至ラハ、直接ニ韓國ニ對スル治外法權ヲ撤去セサルモ、其實之ヲ撤去シタルト同一ノ効果ヲ收ムルコトヲ得ルニ因リ、韓國ノ爲メニ謀ルモ亦至便ノ事ト謂ハサルヲ得ス。而シテ之ヲ實行スルニ付テハ、數個ノ法令ト韓國ニ對スルーノ取極トヲ要スルノミニテ、經費其他ニ關シテハ別段ノ施設ヲ爲スニ及ハサル儀ト思考致シ候ニ付、試ニ別紙法令案ヲ草シ御參考ニ供シ候。

但別紙法令案ノ外訴訟手續、監獄事務及ヒ法律上ノ共助ニ關シ少許規定ヲ要スレトモ此等ノ案ハ省略致シ候。

法律案

韓國ニ於ケル裁判事務ニ關スル件

第一條 韓國ニ於ケル訴訟事件、非訟事件及檢察ノ事務ハ統監府裁判所及

1) “享クル”은 “享クル”의 오키로 보인다.

2) 1908년 5월 19일 체결된 “한국에서의 發明, 意匠, 商標 및 著作權의 보호에 관한 일미조약”을 가리킨다.

統監府裁判所檢事局之ヲ行フ。

第二條 裁判所ノ階級、位置、名稱及管轄區域ハ其名稱ニ(統監府)ヲ冠スル外、韓國裁判所ノ階級、位置、名稱及管轄區域ニ同シ。

第三條 裁判所構成法中裁判所ノ構成、裁判權、檢事局ノ附置及裁判所並檢事局ノ職員ノ名稱、職務及監督ニ關スル規定ハ、左ノ變更ヲ以テ統監府裁判所及統監府裁判所檢事局ニ之ヲ準用ス。

- 一. 控訴院ノ部ハ三人ノ判事、大審院ノ部ハ五人ノ判事ヲ以テ之ヲ組織ス。
- 二. 大審院ハ地方裁判所及控訴院ノ爲シタル第二審判決ニ對スル上告ニ付裁判權ヲ有ス。
- 三. 裁判所及檢事局ヲ通シテ書記課ヲ置ク。但シ必要ナル場合ニ於テハ各別ニ之ヲ置クコトヲ得。
- 四. 司法大臣ノ職務ハ統監之ヲ行フ。
- 五. 執達吏ノ職務ハ裁判所書記又ハ警察官吏之ヲ行フ。
- 六. 廷丁ノ職務ヲ行フヘキ者ハ裁判所之ヲ定ム。

第四條 裁判所及檢事局ノ職員ハ日本人ニシテ韓國ノ裁判所及檢事局ノ職員ト爲リタル者ヲ以テ之ニ充ルコトヲ得。

第五條 裁判事務ニ關シ韓國ニ於テ適用スル法律ニ付テハ命令ヲ以テ別段ノ規定ヲ設クルコトヲ得。

附則

第六條 本法ハ明治四十二年四月一日ヨリ之ヲ施行ス。

第七條 明治三十九年法律第五十六號ハ之ヲ廢止ス。

第八條 本法施行前統監府法務院ニ於テ受理シタル訴訟事件及非訟事件ハ現在ノ儘統監府京城控訴院ニ移ルモノトシ、既ニ爲シタル裁判ハ統監府京城控訴院之ヲ爲シタルト看做ス。

第九條 本法施行前理事廳ニ於テ受理シタル訴訟事件及非訟事件ハ第二條及第三條ノ規定ニ從ヒ現在ノ儘相當ノ統監府地方裁判所又ハ統監府區

裁判所ニ移ルモノトシ、既ニ爲シタル裁判ハ其ノ地方裁判所又ハ區裁判所之ヲ爲シタルモノト看做ス。

勅令案

統監府裁判所職員ニ關スル件

第一條 日本人ニシテ韓國裁判所ノ判事、檢事、書記長又ハ書記タル者ハ之ヲ統監府裁判所ノ判事、檢事、書記長又ハ書記トシ、其ノ韓國裁判所ニ於ケルト同一ナル統監府裁判所ノ職ニ補セラレタルモノトス。

第二條 前條ノ職員ニ付テハ文官任用令、文官分限令及高等官官等俸給令第七條、第八條ノ規定ニ依ラサルコトヲ得。

勅令案

統監府裁判所繙譯官及繙譯官補官制

第一條 統監府裁判所ニ繙譯官及繙譯官補ヲ置ク。

第二條 繙譯官ハ奏任トシ繙譯官補ハ判任トス。

第三條 繙譯官及繙譯官補ハ上官ノ指揮監督ヲ承ケ文書繙譯及通譯ヲ掌ル。

第四條 日本人ニシテ韓國裁判所ノ繙譯官又ハ繙譯官補タル者ハ之ヲ統監府裁判所ノ繙譯官又ハ繙譯官補トシ、其ノ韓國裁判所ニ於ケルト同一ナル統監府裁判所ノ職ニ補セラレタルモノトス。

第五條 前條ノ繙譯官及繙譯官補ニ付テハ文官任用令第四條、文官分限令及高等官官等俸給令第七條、第八條ノ規定ニ依ラサルコトヲ得。

勅令案

統監府裁判所職員官等給與令

第一條 統監府裁判所ノ判事、檢事ノ官等ハ其ノ職務ニ因リ左ノ如ク之ヲ定ム。

大審院

長

高等官一等又ハ二等

部長 高等官二等乃至四等

判事 高等官三等乃至五等

大審院檢事局

檢事總長 高等官一等又ハ二等

檢事 高等官二等乃至五等

控訴院

長 高等官一等又ハ二等

部長 高等官三等乃至五等

判事 高等官四等乃至六等

控訴院檢事局

檢事長 高等官一等又ハ二等

檢事 高等官三等乃至六等

地方裁判所

長 高等官二等乃至四等

部長 高等官四等乃至六等

判事 高等官五等乃至七等

地方裁判所檢事局

檢事正 高等官二等乃至四等

檢事 高等官四等乃至七等

區裁判所

判事 高等官四等乃至七等

區裁判所檢事局

檢事 高等官四等乃至七等

第二條 統監府裁判所ノ書記長及繙譯官ノ官等ハ高等官四等以下トシ、書記ノ判任トス。

第三條 判事、檢事ノ本俸ハ、高等官二等以上ノ者ニ付テハ統監府及理事廳職員給與令中參與官ニ關スル規定ヲ準用シ、高等官三等以下ノ者ニ付テ

ハ同令中委任文官本俸第一號表、書記長及繙譯官ニ付テハ委任文官本俸第二號表ヲ準用ス。

第四條 統監府及理事廳職員給與令第七條ノ規定ハ統監府裁判所職員ニ之ヲ準用ス。

第五條 韓國裁判所ノ職員ニシテ統監府裁判所ノ職員タル者ニハ統監府及理事廳職員給與令第七條ノ二ノ規定ヲ準用ス。

자료 2

韓國ニ於ケル裁判制度改正ニ關スル卑見

梅 謙次郎

倉富法部次官ノ提議ニ係ル改正意見ハ若シ支障ナク之ヲ行フコトヲ得ヘク
ンハ最モ事宜ニ適シタルモノノ如シ。唯左ノ三點ニ於テ聊カ疑ナキ能ハス。

一. 經費ハ之ヲ如何ニスヘキカ。

倉富次官ノ意見ニ據レハ別ニ經費ヲ要セサルカ如キモ、小官ハ輒ク之ヲ信
スルコト能ハス。夫レ邦人ノ韓國ニ在留スル者、其數既二十萬ヲ以テ算ヘ、而
モ其増加ノ比例ハ實ニ著シキモノアルヲ見ル。故ニ百萬ヲ以テ算フルニ至ルコ
ト、必スシモ遠キ將來ヲ待タサルヘシ。故ニ今法務院及ヒ理事廳ノ裁判事務ヲ
移シテ之ヲ韓國裁判所ノ管轄ニ屬セシメンカ、之カタメニ韓國裁判所ノ事務
ヲ増加スルコト著シカルヘキハ敢テ喋喋ヲ待タサルナリ。顧フニ韓國新裁判所
ノ開廳日尙ホ淺キヲ以テ參考ニ資スヘキ統計ナキニ苦シムト雖モ、偶々平壤
控訴院、同地方裁判所及ヒ同區裁判所ニ於ケル昨四十一年八月ヨリ同十二月
ニ至ルマテノ統計ヲ得タルカ故ニ、左ニ之ヲ法務院及ヒ理事廳ノ統計ニ比較
シ併セテ前三年間在留邦人ニ關スル統計ヲ掲ケン。

四十一年八月乃至十二月

平壤控訴院事件數

四七

同地方裁判所事件數

三〇四

同區裁判所事件數

四六八

地方, 區計 七七二

三理事廳ノ管轄區域中ヨリ

黃海道ノ一部ヲ除クモノニ

該當ス。

四十一年一月乃至十二月

法務院事件數

一八二

平壤理事廳事件數

六二八

鎭南浦理事廳事件數

二五九

新義州理事廳事件數

三〇九

理事廳計 一一九六

法務院ノ事件數ハ假ニ三控訴院ニ平分シテ其十二分ノ五ヲ, 理事廳ノ事件數ハ其十二分ノ五ヲ算スレハ,

法務院 二五 理事廳 四九八

之ヲ平壤控訴院並ニ同地方, 區裁判所ノ事件ニ比例スレハ,

〇.五三 〇.六五

右ハ韓國裁判所ノ開廳日尙ホ淺キヲ以テ, 其事件數自ラ少キコトヲ思ハサルヘカラサルカ故ニ(但舊受件數ヲ含ム), 殆ト標準トスルニ足ラサルカ如キモ, 亦以テ其一斑³⁾ヲ窺フニ足ラン. 殊ニ法務院件數ノ少キハ京城ニ一アルノミナルコトヲ以テ其理由ノ一ニ算フヘキカ故ニ, 若シ之ヲ三控訴院ノ管轄ニ分屬セシメンハ幾分カ其數ヲ増スヘキコト蓋シ疑ナシ.

韓國人口數(三十九年十月調)

九,七六一,六七一

平壤管内

九一二,八六六

在留邦人數(四十一年十二月調)

一二六,四三二

一〇,七四七

3) 원문 그대로

鎮南浦管内

四〇二,五九八 三,一二二

新義州管内

六〇〇,一一九 四,四二三

小計 一,九一五,五八三 一八,二九二

右ノ百分比例ヲ示セハ、

全韓國

〇.〇一三

三管内

〇.〇一〇

在留邦人ノ數ニ付キ前三年間ノ比例ヲ示セハ、

三十九年

四十年

八三,三一五

九八,〇〇一

翌年增加分トノ比例

〇.一八

〇.二九

在留邦人數ノ統計ニ上ル者ハ或ハ全數ノ半ニ過キサルカノ疑アリ。故ニ一方ニ於テハ事件數ノ益々増加スヘキコトヲ思ハシムルト同時ニ(殊ニ裁判所ノ數著シク増加スヘキカ故ニ、地理ノ便ヲ得ルタメ事件ノ増加ハ著シク人口増加ノ割合ニ超過スヘシ)、前掲ノ事件數ハ右ニ掲ケタル人口數ニ比例シ難シト雖モ、要スルニ邦人ニ關スル事件ハ韓人ニ關スル事件ヨリ著シク多數ナルコト蓋シ疑ヲ容ルヘキニ非ス。是レ必スシモ邦人ニ健訟ノ風アルカタメニ非スシテ、非訟事件其他我國法カ裁判所ノ事務ニ屬セシメタルモノノ種類多キコト、其一大原因タラスニハアラサルナリ。

以上論スル所ニ因リ今法務院及ヒ理事廳ノ裁判事務ヲ韓國裁判所ニ移サンカ、之カタメニ著シク韓國裁判所ノ事務ヲ増加スヘキコト疑ナシ。加フルニ我國法ニ依ル手續ハ韓國法ノ規定ニ同シカラス、韓國法ノ手續ハ概シテ我國法ノ手續ヨリ簡ナルカ故ニ、裁判所ノ事務ヲ増加スルコトハ事件數ノ増加ノ割合ニ超スヘキノミナラス、頗ル事務ノ錯綜ヲ來スヘキハ蓋シ言フヲ待タル所ナリ。故ニ經費ノ増加ハ必ス之ヲ豫期セサルヘカラス。而シテ是レ我國ノ裁判

事務ノタメナルカ故ニ、我國庫ヨリ之ヲ支辨スヘキハ理ノ當然ナルカ如シ。

二. 手續ハ之ヲ如何ニスヘキカ。

裁判手續ノ同シカラサルコトハ既ニ前段ニ述ヘタルカ如シ。而シテ將來ニ於テモ全ク之ヲ同一ニスルコト能ハサルヘシ。然リト雖モ同一裁判所ニ於テ同種ノ事件ヲ取扱フニ常ニ二種ノ手續アリテハ其繁雜想フヘク、動モスレハ錯誤ヲ生スヘキコトハ大ニ熟慮ヲ要スル所ナルヘシ。小官ノ見ル所ヲ以テスレハ、事ニ害ナキ限ハ韓國法ノ手續ニ依ルヘキモノトスルヲ簡便ナリトス。唯之カタメニハ特別ノ規定ヲ要スルモノ多ク。顧フニ立案者ハ法律案第五條ニ依リ其規定ヲ設ケント欲スル者ナルヘシト雖モ、其定案ヲ見サレハ遂ニ贊否ヲ決シ難キモノアルナリ。

三. 法令案ニ對スル卑見

甲. 法律案ニ對スルモノ

第二條ハ精神ニ於テハ此ノ如クナラサルヘカラサルモ、法文ノ體裁トシテハ聊カ議スヘキモノアルカ如シ。例ヘハ左ノ如ク改ムルヲ可トス。

統監府裁判所ハ左ノ四種トシ、其位置、名稱及管轄區域ハ統監之ヲ定ム。

- 一. 區裁判所
- 二. 地方裁判所
- 三. 控訴院
- 四. 大審院

第八條ニ據レハ「統監府法務院ニ於テ…既ニ爲シタル裁判ハ統監府京城控訴院之ヲ爲シタルモノト看做ス」モノトセリ。若シ本條ノ意ニシテ、法務院ノ裁判ニ對シ更ニ大審院ニ上訴スルコトヲ得ルモノトスルニ在ラハ、是レ既得權ヲ害スルノ弊アリテ聊カ不當ナリト信ス。

本案中訴訟代理人ニ關スル規定ナシ。然レトモ新法施行ノ際、法務院又ハ理事廳ニ於テ訴訟代理人タル者ハ事件カ新裁判所ニ移屬シタル後モ仍ホ代理權アル者トセサルヘカラサルカ如シ。其他手續ニ關シテ類似ノ規定ヲ要スヘキモ、是ハ手續ニ關スル特別規定中ニ收ムヘキカ。

乙. 統監府裁判所職員ニ關スル勅令案ニ對スルモノ

第一條ハ韓國官吏ノ任命ヲ以テ直チニ日本官吏任命ノ效力アルモノトスルニ在リテ, 聊カ其當ヲ得ス. 手續稍煩ニ涉ルノ不便ナキニ非スト雖モ, 任補ハ日本官憲ニ於テ之ヲ行フヲ可トス.

丙. 統監府裁判所繙譯官及繙譯官補官制ニ對スルモノ

第四條ハ前項ト同一ノ趣意ヲ以テ改ムヘシ.

丁. 統監府裁判所職員官等給與令ニ對スルモノ

第二條書記長及繙譯官ノ官等ヲ高等官四等以下トシタルハ, 内地ノ書記長ヲ高等五等以下トシタルト權衡ヲ得サルカ如シ(二十七年勅令第十六號).

자료 3

司法權委任協約ノ實施ニ關スル卑見

梅 謙次郎

一. 今般韓國カ我邦ニ司法權ヲ委任セシニ付テハ, 此協約ヲ實施スル曉ニハ裁判事務ハ一切我官衙ノ管轄ニ屬スヘク, 一モ韓國官憲ノ干與ヲ許スヘカラス. 隨テ從來區裁判所未開廳地ニ於テ郡守カ行施⁴⁾セル裁判權ハ協約ノ實施ト同時ニ當然消滅ニ歸セサルヘカラス. 故ニ此時ニ當テ各區裁判所皆開廳セラルルニ非サレハ, 人民ノ不便實ニ尠少ナラサルヘシ. 何トナレハ區裁判所ノ管轄區域ハ三個郡ヲ合セタルモノ多キヲ以テ遠近ノ點ヨリ言ヘハ, 郡守ノ裁判ヨリモ不便ナルヘキニ, 今區裁判所中未夕開廳セサルモノアルニ拘ハラズ, 郡守ノ裁判權ヲ消滅セシムルトキハ, 人民ハ到底其不便ニ堪ヘサルヘケレハナ

4) 원문 그대로

り。故ニ若シ直チニ全國ノ區裁判所ヲ開廳スルコト能ハストセハ、當分多少ノ經過的の制度ヲ採用スルノ必要アルヘシ。今試ニ之ヲ言ハレニ開廳區裁判所ノ判事ヲシテ未開廳區裁判所ノ判事ヲ兼ネシメ、時時其地ニ出張シテ裁判ヲナサシムルコト或ハ可ナルンカ。此ノ如クスラハ、判事ノ數ニ不足アルモ當分甚シキ支障ヲ見サルヘク、又廳舎ナキモ差向キ郡衙若クハ警察官署ニ於テ裁判ヲナスコトヲ得ヘシト信ス。但此案ヲ採用セシニハ各區裁判所所在地ニ警察官署ノ設置ナルヘカラス、而モ此設置ハ一般ノ必要上ヨリ觀ルモ既ニ急務ニ屬スルモノナルヲ以テ、此際之ヲ斷行セラレシニハ是レ寧ロー舉兩得ノ策ト謂フヘキカ。

二. 前項ノ設備成ラサルニ先チテ協約ヲ施行セラルル必要アリトセハ、其設備アル地方ヨリ之ヲ實施シ、其設備ノ成ルニ從テ之ヲ全國ニ及ホスノ外ナキカ如シ。

三. 裁判所ノ手續ニ付テハ原則トシテハ日本人被告ナルトキハ日本法ヲ適用シ、韓國人被告ナルトキハ韓國法ヲ適用スヘキコト勿論ナルヘシ。而シテ韓國法ハ當分彼民刑訴訟規則ニ依ルヘキコト言フヲ待タサルヘキモ、日本法ハ直チニ取テ以テ韓國ニ行ヒ難キモノ尠シトセサルヘク、例ヘハ、現行ノ「韓國ニ於ケル裁判事務取扱規則」(三十九年勅一六六號)ニ類スル規程ヲ要スルコト、蓋シ何人モ異議ナキ所ナルヘシ。顧フニ別紙倉富法部次官上申書中「統監府裁判所事務取扱規則」ハ略之ニ相當スルモノナルヘシ。唯現行法ニ於テハ明治三十九年法律第五十六號第十條ヲ以テ、「本法ニ規定スルモノ外、裁判事務ニ關シ韓國ニ於テ適用スル法律ニ付テハ、勅令ヲ以テ別段ノ規定ヲ設クルコトヲ得」ト規定セルカ故ニ、右ノ勅令ハ此條ノ委任ニ據リテ發セラレタルモノト謂フヘシ。故ニ今回モ先ツ法律中同様ノ規定ヲ設クルヲ妥當トス。而シテ是レ別紙中「統監府裁判所構成法」ヲ改メテ「統監府裁判法」其他ノ名稱ヲ採用シ、中ニ右ノ規定ヲ設クルモノナラン。或ハ曰ハン、我帝國憲法ハ韓國ニ施行セラレス。故ニ勅令ヲ以テ訴訟手續ヲ定ムルモノ可ナリト。今憲法ニ關スル此根本問題ノ解決ヲ避ケテ、單ニ從來我政府ノ取り來リシ方針ニ依ルモ、既ニ

明治三十九年法律第五十六號ニ於テ第十條ノ規定ヲ必要トセシヲ以テ、今之ニ代ルヘキ法律ヲ發布セラルルニ方リテモ亦同様ノ規定ヲ存スルヲ穩當トス。然ラスハ所謂「統監府裁判所構成法」モ亦勅令ヲ以テ之ヲ定メラレヲ可ナリト謂ハサルヘカラス。然レニ之ヲ法律トシテ發布セラルルヲ必要トセシ所以ノモノハ、蓋シ徒ラニ帝國議會ヲシテ政府其協贊ヲ求ムルコトヲ忌避スルニ非サルナキヤヲ疑ハシメ、進テ或ハ憲法ノ解釋ニ付キ政府カ議會ト見解ヲ異ニスルカ如キ爭議ヲ惹起スノ愚ヲ思ヘハナリ。

四. 裁判所職員ノ資格ニ付テハ原則トシテ我裁判所構成法ノ規定ニ依ルヘキコト勿論ナルヘキモ、從來ノ經驗ニ徴スルニ多少特別任用ノ制ヲ採ルニ非サレハ、必要人員ヲ得ルコト困難ナルヘシ。而シテ現職員ハ總テ舊ニ仍リ之ヲ採用セラルルヲ妥當トスルノミナラス、待遇、俸給等、實際ニ於テ從來ト大差ナキヲカメラルルニ非サレハ、當初赴任ノ條件ト大ナル逕庭ヲ生シ遂ニ不平者ヲ出シ、或ハ職ヲ辭シテ内地ニ歸リ、或ハ執務ニ熱心ナルコト舊ノ如クナラサルノ恐ナキニ非ス。而シテ俸給ニ付テハ大ナル困難ナルヘキモ、待遇ニ付テハ現今韓國政府ニ於テ受クル所ト同一ノ待遇ヲ與ルコト頗ル困難ナルヘシ。故ニ平均一等ヲ下ルカ如キハ(例、親任官ハ勅任一等トナリ、勅任一等ハ同等トナルノ類)、或ハ已ムヲ得サル所ナルヘシ。是ニ於テ小官試ニ左ニ一案ヲ具シテ統監閣下ノ取捨ヲ仰カントス。是レ單ニ司法官ニ限ルモノニ非ス、實ニ在韓國日本官吏全體ノタメニ考案ヲ試ミタルモノナリ。

- 一. 日本國ハ宗主國ニシテ韓國ハ保護國ナリ。故ニ國際法ニ於テモ其等級同シカラス。然ラハ日本ノ官吏ハ、名其等ニ同シウスルモ、實ハ韓國官吏ニ優ル待遇ヲ受クルコト至當ナルヲ信ス。故ニ官中席次其他ニ於テ日本官吏ハ韓國官吏ヨリ待遇ニ於テ一等ヲ進メ(例、韓國親任官ト日本一等官ト、韓國勅任一等官ト日本二等官トハ各同等トスルコト)、任命ノ先後ニ依テ其次席ヲ定ムルコト。
- 二. 日本官吏ニシテ韓國官吏ヲ兼ヌル者ハ第一項ノ次席ニ依リ其高キニ從フコト。

五. 辯護士ハ將來我辯護士法ニ定メタル資格アル者ニ限ルヘキハ當然ナリ(韓國辯護士ニ關スル特例ハ別ナリ). 然リト雖モ, 從來保安規則第二條ニ依リ理事官ノ許可ヲ受ケテ訴訟代理人ノ業務ニ從事スル者アリ. 今直チニ其營業權ヲ奪フハ, 聊カ酷ニ失スルノ議ナキニ非ス. 勿論此等ノ者ノ中ニハ實際訴訟代理人タルニ適セサル者アルヘシト雖モ, 此等ハ懲戒ノ方法ニ由リ之ヲ制裁スルコトヲ得ヘシ. 殊ニ懲戒スヘキ行爲アラハ直チニ其營業ノ許可ヲ取消スコトヲ得ルモノトスルモ可ナリ.

六. 司法警察官ハ必ス日本ノ官吏ヲ用ヒ直接ニ檢事ノ命令ニ服セシムルヲ可トス. 但實際ハ韓國警察官タル日本人ヲ之ニ任命スルヲ便トス. 蓋シ別紙中「司法警察官ノ資格ニ關スル」勅令ヲ必要トセシハ此趣旨ニ外ナラスト信ス.

〈번역〉

1. 倉富勇雄三郎, 「韓國에서의 裁判事務에 관한 件」

재한국 일본인에 대한 재판제도는 領事裁判으로부터 지금의 理事廳裁判으로 바뀐 것으로서, 영사재판에 대해서는 內地의 상급재판소에 상소하는 것을 허용하던 것을 바꾸어 지금은 상소를 심판하게 하기 위해 특별히 統監府法務院을 설치했으나, 제도의 큰 틀에서는 영사재판의 시대와 각별히 달라진 게 없다. 재한국 일본인의 소송을 심판하게 하기 위해 특별히 다수의 재판소를 설치하는 것은 본래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기왕에는 현행의 제도를 최선의 것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사청은 재판을 專務로 삼지 않기 때문에, 가령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의 기능은 사법관에 뒤질 바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점에서 專務의 재판소에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는 것은 아마도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반대로 한국의 재판제도를 보면, 막 창설되어 불비하고 정돈되지 않은 점이 많은 것은 애당초 피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재판소의 구성이

대략 일본의 현행제도와 같고, 그 직원 중 다수가 또한 일본으로부터 병용되었기 때문에, 재판의 실질에서는 반드시 일본의 재판소에 견주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법률은 극히 불완비하여서 재한국 일본인으로 하여금 결국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게 하기 어려운 것은 말할 나위 없다. 법률의 제정은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적어도 금후 2~3년을 소비하지 않으면 그 완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금일에 있어서는 재한국 일본인에 관한 소송은 한국에 병용된 일본법관으로 하여금 일본재판소를 구성하게 하고 일본의 법률에 따라 심판하도록 하는 것보다 편리한 방도는 없을 것이다. 이 방법에 의하는 때에는 한국에 특별히 손해되는 바 없고 일본인이 이익을 누리는 바도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專務의 일본재판소를 설치하게 된다면, 특허·의장·상표 등에 관한 日米協約의 예를 확충하여 재한국 외국인으로 하여금 일체의 소송에 관하여 일본재판소의 재판권에 복종하게 하는 것도 또한 지극히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만약 외국인으로 하여금 일본의 재판권에 복종하게 할 수 있게 된다면, 직접 한국에 대한 치외법권을 철거하지 않더라도 기실 그것을 철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한국을 위하여도 모하더라도 역시 지극히 편리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에는 수개의 법령과 한국에 대한 하나의 결정을 요할 뿐이어서, 경비, 기타에 관해서는 별단의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시험삼아 별지 법령안을 기초하고 참고하시도록 올린다.

다만 별지 법령안 외에 소송절차, 감옥사무 및 법률상의 共助에 관해 몇몇 규정들이 필요하지만, 이 안들은 생략한다.

법률안 한국에서의 재판사무에 관한 건

제1조 한국에서의 소송사건, 비송사건 및 검찰의 사무는 통감부재판소 및 통감부재판소검사국이 이를 행한다.

제2조 재판소의 계급, 위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그 명칭 앞에 “통감부”를 붙이는 것 외에는 한국재판소의 계급, 위치, 명칭 및 관할구역과 같다.

제3조 재판소구성법 중 재판소의 구성, 재판권, 검사국의 附置 및 재판소와 검사국의 직원의 명칭, 직무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통감부재판소 및 통감부재판소검사국에 이를 준용한다.

1. 공소원의 부는 3인의 판사, 대심원의 부는 5인의 판사로써 이를 조직한다.
2. 대심원은 지방재판소 및 공소원이 한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3. 재판소 및 검사국을 통틀어 서기과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각 별도로 이를 둘 수 있다.
4. 사법대신의 직무는 통감이 이를 행한다.
5. 집달리의 직무는 재판소서기 또는 경찰관리가 이를 행한다.
6. 정리의 직무를 행할 자는 재판소가 이를 정한다.

제4조 재판소 및 검사국의 직원은 일본인으로서 한국의 재판소 및 검사국의 직원이 된 자로써 이를 충원할 수 있다.

제5조 재판사무에 관하여 한국에서 적용하는 법률에 관해서는 명령으로써 별단의 규정을 둘 수 있다.

부칙

제6조 본법은 메이지(明治)42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7조 메이지39년 법률 제56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8조 본법 시행 전에 통감부법무원에서 수리한 소송사건 및 비송사건은 현재 상태대로 통감부경성공소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 이미 한 재판은 통감부경성공소원이 이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본법 시행 전에 이사청에서 수리한 소송사건 및 비송사건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상태대로 상당한 통감부지방재판소 또는 통감부구재판소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 이미 한 재판은 그 지방재판소 또는 구 재판소가 이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칙령안 통감부재판소직원에 관한 건

제1조 일본인으로서 한국재판소의 판사, 검사, 서기장 또는 서기인 자는 이를 통감부재판소의 판사, 검사, 서기장 또는 서기로 삼고, 그 한국재판소에서와 동일한 통감부재판소의 직에 보하여진 것으로 한다.

제2조 전조의 직원에 관해서는 문관임용령, 문관분한령 및 고등관관등봉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칙령안 통감부재판소번역관 및 번역관보관제

제1조 통감부재판소에 번역관 및 번역관보를 둔다.

제2조 번역관은 주임으로 하고 번역관보는 판임으로 한다.

제3조 번역관 및 번역관보는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문서번역 및 통역을 담당한다.

제4조 일본인으로서 한국재판소의 번역관 또는 번역관보인 자는 이를 통감부재판소의 번역관 또는 번역관보로 삼고, 그 한국재판소에서와 동일한 통감부재판소의 직에 보하여진 것으로 한다.

제5조 전조의 번역관 및 번역관보에 관해서는 문관임용령 제4조, 문관분한령 및 고등관관등봉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칙령안 통감부재판소직원 관등급여령

제1조 통감부재판소의 판사, 검사의 관등은 그 직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정한다.

대심원

장	고등관 1등 또는 2등
부장	고등관 2등 내지 4등
판사	고등관 3등 내지 5등

대심원검사국

검사총장	고등관 1등 또는 2등
검사	고등관 2등 내지 5등

공소원

- 장 고등관 1등 또는 2등
- 부장 고등관 3등 내지 5등
- 판사 고등관 4등 내지 6등

공소원검사국

- 검사장 고등관 1등 또는 2등
- 검사 고등관 3등 내지 6등

지방재판소

- 장 고등관 2등 내지 4등
- 부장 고등관 4등 내지 6등
- 판사 고등관 5등 내지 7등

지방재판소검사국

- 검사장 고등관 2등 내지 4등
- 검사 고등관 4등 내지 7등

구재판소

- 판사 고등관 4등 내지 7등

구재판소검사국

- 검사 고등관 4등 내지 7등

제2조 통감부재판소의 서기장 및 번역관의 관등은 고등관 4등 이하로 하고 서기는 판임으로 한다.

제3조 판사, 검사의 본봉은 고등관 2등 이상의 자에 관해서는 통감부 및 이 사청직원급여령 중 參與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고등관 3등 이하의 자에 관해서는 동령 중 주임문관본봉 제1호표, 서기장 및 번역관에 관해서는 주임문관 본봉 제2호표를 준용한다.

제4조 통감부 및 이 사청직원급여령 제7조의 규정은 통감부재판소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 한국재판소의 직원으로서 통감부재판소의 직원인 자에게는 통감부 및

이사청직원급여령 제7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2. 梅謙次郎, 「韓國에서의 裁判制度 改正에 관한 卑見」

쿠라토미(倉富) 法部次官이 제의한 개정의견은 만약 지장없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면 가장 事宜에 적합한 것 같다. 다만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약간 의문이 없을 수 없다.

1. 경비는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쿠라토미 차관의 의견에 의하면 특별히 경비를 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소관은 쉽사리 이를 믿을 수 없다. 무릇 邦人으로서 한국에 재류하는 자 그 수가 이미 10만에 이르고, 더욱이 그 증가의 비율은 실로 현저하다. 따라서 1백만이 이르는 것이 반드시 먼 장래의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지금 법무원 및 이사청의 재판사무를 옮겨 이를 한국재판소의 관할에 속하게 하면, 그 때문에 한국재판소의 사무가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굳이 이 말 저 말 할 것도 없다. 생각건대 한국 신재판소의 개청일이 아직 일천하여 참고로 삼을 만한 통계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지만, 마침 평양공소원, 동 지방재판소 및 동 구재판소에서 의 지난 메이지41년(1908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통계를 얻은 까닭에, 아래에서 이를 법무원 및 이사청의 통계와 한데 비교하여 이전 3년간의 在留 邦人에 관한 통계를 들어본다.

메이지41년(1908년) 8월부터 12월	메이지41년(1908년) 1월부터 12월
평양공소원 사건수	법무원 사건수
47	182
동 지방재판소 사건수	평양이사청 사건수
304	628
동 구재판소 사건수	진남포이사청 사건수

468	259
지방·구재판소계 772	신의주이사청 사건수
세 이사청 관할구역 중에서	309
황해도의 일부를 뺀 것임	이사청계 1,196

법무원의 사건수를 시험삼아 세 공소원에 平分하여 그 12분의 5를, 이사청의 사건수는 그 12분의 5를 계산하면,

법무원 25	이사청 498
이를 평양공소원 및 동 지방·구재판소의 사건에 비례하면,	
0.53	0.65

위는 한국재판소의 개청일이 아직 일천하여, 자연히 그 사건수가 적음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다만 舊受件數를 포함한다), 거의 표준으로 삼기에 부족할 듯하지만, 또한 이를 가지고 그 일반을 살펴보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특히 법무원 사건수가 적은 것은 경성에 1개만이 있다는 것을 그 이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므로, 만약 그것을 세 공소원의 관할로 분속시킨다면, 얼마간 사건수가 증가하리라는 것은 아마도 의심할 여지없다.

한국인구수(메이지39년(1906년) 10월 조사) 재류방인수(메이지41년(1908년) 12월 조사)

9,761,671	126,432
평양관내	
912,866	10,747
진남포관내	
402,598	3,122
신의주관내	
600,119	4,423
소계 1,915,583	18,292

위의 백분비례를 나타내면,⁵⁾

全韓國	三管内
0.013	0.010

재류방인의 수에 관하여 이전 3년간의 비례를 나타내면,

메이지39년(1906년)	메이지40년(1907년)
83,315	98,001

이듬해의 증가분과의 비례는,⁶⁾

0.18	0.29
------	------

재류방인수의 통계에 오른 자는 전체 수의 반에 불과하리라고 의심된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사건수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동시에(특히 재판소의 수가 현저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편리해져서 사건의 증가가 현저히 인구증가의 비율을 초과할 것이다), 앞서 든 사건수는 위에 든 인구수에 비례하기 어려울지라도, 요컨대 방인에 관한 사건은 한인에 관한 사건보다 현저히 다수가 될 것임은 생각건대 의심할 나위 없다. 이는 반드시 방인에게 健訟의 경향이 있기 때문이 아니며, 비송사건, 기타 아국법이 재판소의 사무에 속하게 한 사무의 종류가 많은 것이 일대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상 논한 바에 의하여 이제 법무원 및 이사청의 재판사무를 한국재판소로 옮기면, 그 때문에 현저하게 한국재판소의 사무가 증가될 것임은 분명하다. 덧붙여 我國法에 의한 절차는 한국법의 규정과 같지 않다. 한국법의 절차는 대체로 아국법의 절차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재판소 사무의 증가는 사건수의 증가율을 뛰어넘게 될 뿐만 아니라, 현저하게 사무의 착종을 초래할 것임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러므로 경비의 증가는 반드시 이를 豫期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

5) “全韓國”은 전체 한국인수 대 전체 일본인수의 비율, 즉 $126,432 \div 9,761,671 = 0.013$ 을, “三管内”은 평양·진남포·신의주 관내 한국인구수 대 일본인구수의 비율, 즉 $18,292 \div 1,915,583 = 0.010$ 을 나타낸다.

6) 메이지39년(1906년)부터 메이지41년(1908년) 3년간의 한국거류 일본인의 인구증가율을 계산한 것이다. 즉 1906년에서 1907년은, $(98,001 - 83,315) \div 83,315 = 0.18$, 1907년에서 1908년은, $(126,432 - 98,001) \div 98,001 = 0.12$.

고 이는 아국의 재판사무를 위한 것이므로 우리 국고에서 이를 支辨해야 할 책임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것이다.

2. 절차는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절차가 같지 않음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그리고 장래에도 완전히 이를 동일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동일재판소에서 동종의 사건을 취급하는 데에 항상 2종의 절차가 있어서는 그 번잡함을 생각해야 하고, 자칫하면 착오를 낳을 수 있음은 크게 숙려를 요하는 점일 것이다. 小官이 보는 바로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한국법의 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간편하다. 다만 그것을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요하는 것이 많다. 생각건대 입안자는 법률안 제5조에 의하여 그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 같지만, 그 정해진 안을 보지 않고서는 결국 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3. 법률안에 대한 비견

甲. 법률안에 대한 것

제2조는 정신에 있어는 이와 같이 하여야 하겠지만, 법문의 체제로서는 약간 논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이 가하다.

통감부재판소는 다음의 4종으로 하고, 그 위치, 명칭 및 관할구역은 통감이 이를 정한다.

1. 구재판소
2. 지방재판소
3. 공소원
4. 대심원

제8조에 의하면, “통감부법무원에서...이미 한 재판은 통감부경성공소원이 이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만약 본조의 뜻이 법무원의 재판에 대하여 다시 대심원에 상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이는 既得權을 해할 우려가 있어서 다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본안 중 소송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렇지만 신법을 시행할 때 법무원 또는 이사청에서 소송대리인인 자는 사건이 신재판소에 移屬한 후에도 여전히 대리권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기타 절차에 관하여 유사한 규정을 요하지만, 이는 절차에 관한 특별규정 속에 담아야 할 것인가.

乙. 통감부재판소직원에 관한 칙령안에 대한 것

제1조는 한국관리의 임명으로써 곧바로 일본관리 임명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다소 부당하다. 절차가 조금 번거롭게 되는 불편이 없지 않다고 할지라도, 임명과 보직은 일본관현에서 이를 행함이 가하다.

丙. 통감부재판소번역관 및 번역관보관제에 대한 것

제4조는 전항과 동일한 취지로 고쳐야 한다.

丁. 통감부재판소직원 관등급여령에 대한 것

제2조 서기장 및 번역관의 관등을 고등관 4등 이하로 한 것은 내지의 서기장을 고등관 5등 이하로 한 것과 균형이 맞지 않는 듯하다(메이지24년 칙령 제16호).

3. 梅謙次郎, 「司法權委任協約의 實施에 관한 卑見」

1. 금반 한국이 우리나라에 사법권을 위임한 것에 관해서 이 협약을 실시하는 날에는 재판사무는 일체 우리 관아의 관할에 속하게 해야 하고 조금도 한국 관현의 관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종래 區裁判所 미개척지에서 군수가 행사하였던 재판권은 협약의 실시와 동시에 당연히 소멸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때를 맞아 각 구재판소가 모두 개척되지 않으면 인민의 불편이 실로 적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재판소의 관할구역은 3개 군을 합친 것이 많아서 遠近의 점에서 말하면, 군수의 재판보다도 불편할 것인데, 지금 구재판소 중 아직 개척되지 않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재판권을 소멸시키는 때에는 인민은 도저히 그 불편을 감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즉시 전국의 구재판소를 개척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당분간 다소의 경과적

제도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 시험삼아 그것에 관해 말해보면, 개척한 구재판소의 판사로 하여금 미개척 구재판소의 판사를 겸하게 하고 때 때로 그 지역에 출장하여 재판할 하게 하는 것이 어찌면 가하지 않을까 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판사의 수가 부족하더라도 당분간 심각한 지장은 없을 것이며, 또 청사가 없어도 당분간은 郡衙 또는 경찰관서에서 재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안을 채용하려면 각 구재판소 소재지에 경찰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더욱이 경찰관서의 설치의 일반의 필요상에서 보아도 이미 急務에 속하므로, 차제에 이를 단행한다면 이는 오히려 일거양득의 책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2. 전항의 설비가 갖추어지기 전에 먼저 협약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면, 그 설비가 있는 지방부터 이를 실시하고 그 설비가 갖추어짐에 따라 이를 전국에 확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재판소의 절차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일본인이 피고인 때에는 일본법을 적용하고, 한국인이 피고인 때에는 한국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한국법은 당분간 저 民事訴訟規則에 의하여야 할 것임을 말할 나위 없지만, 일본법은 곧바로 가져다가 한국에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적지 않을 것이어서, 예를 들면 현행의 “韓國에서의 裁判事務取扱規則(메이지39년(1906년) 칙령 166호)”과 비슷한 규정을 요함은 아마 누구라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생각건대 별지 쿠라토미 법무차관의 상신서 중 “統監府裁判所事務取扱規則”은 대략 그에 상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메이지39년(1906년) 법률 제56호 제10조로써 “본법에 규정하는 것 외에 재판사무에 관하여 한국에서 적용할 법률에 관해서는 칙령으로써 별단의 규정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위 칙령은 본조의 위임에 의거하여 발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먼저 법률 속에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별지 중 “統監府裁判所構成法”을 고쳐서 “統監府裁判法”이나 기타의 명칭을 채용하고 그 속에 위의 규정을 두어도 가할 것이다. 혹은 말하기를 우리 제국헌법은 한국에 시행되지 않으므로 칙령으로써 소송절차를 정하여도 가하다고 한다. 지금 헌법

에 관한 이러한 근본문제의 해결을 피하고 단지 종래 우리 정부가 취하여 온 방침에 의하더라도, 이미 메이지39년 법률 제56호에서 제10조의 규정을 필요로 하였으므로, 이제 이에 대신할 법률을 발표함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의 규정을 두는 것이 온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른바 “통감부재판소구성법”도 또한 칙령으로써 이를 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를 법률로써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한 까닭은, 아마도 괜히 제국의회로 하여금 정부가 그 협찬을 구함을 기피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나아가 혹시 헌법의 해석에 관하여 정부가 의회와 견해를 달리한다는 爭議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 재판소직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 재판소구성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지만, 종래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다소 특별임용의 제도를 취하지 않으면 필요인원을 얻기 곤란할 것이다. 그리고 현직원은 모두 예전 그대로 이를 채용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대우, 봉급 등이 실제 종래와 큰 차이가 없도록 힘쓰지 않으면, 당초 부임의 조건과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불평하는 자를 내어, 혹은 사직하여 內地로 돌아가거나 혹은 예전과 같이 집무를 열심히 하지 않을 우려가 없지 않다. 그리고 봉급에 관해서는 커다란 곤란이 없겠지만, 대우에 관해서는 현재 한국정부에서 받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기는 몹시 곤란할 것이다. 그러므로 평균 1등을 내리는 것 같은 것은(예를 들어, 친임관은 칙임1등이 되고, 칙임1등은 동 2등이 되는 것) 어찌면 부득이할 것이다. 이에 소관이 시험삼아 다음에 하나의 안을 갖추어 통감 각하의 취사를 삼가 바라고자 한다. 이는 단지 사법관에 한하지 않고, 실로 재한국 일본관리 전체를 위하여 고안을 해본 것이다.

1. 일본국은 宗主國이고 한국은 保護國이다. 그러므로 국제법에서도 그 등급이 같지 않다. 그렇다면 일본의 관리는 명목은 그 등을 같이 하지만 實은 한국관리보다 우월한 대우를 받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宮中席次, 기타에서 일본관리는 한국관리보다 대우에서 1등을 높이고(예, 한국친임관과 일본 1등관, 한국 칙임1등관과 일본 2등관

이 각각 동등하게 하는 것), 임명의 선후에 의하여 그 석차를 정한다.

2. 일본관리로서 한국관리를 겸하는 자는 제1항의 석차에 의하여 그 중 높은 것에 따른다.

5. 변호사는 장래 우리 변호사법에서 정한 자격 있는 자에 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한국변호사에 관한 특례는 별개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종래 보안규칙 제2조에 의하여 理事官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있다. 이제 곧바로 그 영업권을 박탈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논란이 없지 않다. 물론 이들 중에는 실제 소송대리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도 있겠지만, 이들은 징계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제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징계할 만한 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그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하다.

6. 사법경찰관은 반드시 일본의 관리를 임용하여 직접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다만 실제로는 한국경찰관인 일본인을 이에 임명하는 것이 편하다. 생각건대 별지 중에서 “사법경찰관의 자격에 관한” 칙령을 필요로 한 것은 이러한 취지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